
2025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· 관리 용역

과업지시서

2025. 5.



과천도시공사

목 차

I. 과업개요	1
1. 사업목적	1
2. 사업개요	1
II.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	3
1. 과업범위	3
2. 과업내용	4
III. 과업수행 지침	4
1. 과업수행 일반사항	4
2. 과업 전반사항	5
3. 사업계획 제출	5
4. 사업의 시행	5
5. 사전승인 등	6
6. 시설물·장비의 설치·관리 등	6
7. 사업비 집행 및 관리	6
8. 사업비의 지급	6
9. 사업비 정산 및 반환	7
10.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	7
11. 계약이행의 보증 등	7
12. 지도·감독	8
13. 손해보상 등	8
14. 계약의 해지 등	8
15. 기타 사항	9
IV. 세부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	9
1. 세부 과업내용	9
2.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	14
[붙임1] 물놀이형 유원시설 규격서(안)	17
[붙임2] 문원·과천갈현초등학교 내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	18
[붙임3] 야외 물놀이장 안전·CS 교육일지	20
[붙임4] 동향보고서	21

과업지시서

I 과업개요

1. 사업목적

본 용역은 과천시 문원체육공원·갈현초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, 시설물·수질관리 및 청소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

2. 사업개요

가. 과업명: 2025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 용역

나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~ 2025. 9. 26.(금)

다. 위치, 시설물 현황 및 용역 수행기간

구분	문원체육공원 (물놀이터+바닥분수)	과천갈현초등학교 주차장 (임시 물놀이장)
위치	과천시 문원로 56	과천시 갈현동 145
면적	3,300㎡	약 500㎡
운영형태	물놀이형 수정시설	기타 유원시설
주요시설	물놀이터(566.2㎡), 바닥분수(201㎡), 휴게공간(2,532.8㎡) 등	이동식 물놀이장(120㎡), 부대시설(30㎡), 휴게공간(100㎡) 등
		규격 [별지1] 참고 · 조립식풀장: 10m×15m×0.9m · 워터슬라이드: 7m×4m×5m · 에어풀장: 10m×8m×0.6m · 에어풀장: 4m×3m×0.6m
사전점검	2025. 7. 1.(화) ~ 7. 2.(수) / 2일간	설치: 2025. 7. 25.(금) 17시 ~ 26.(토)
시범운영	2025. 7. 3.(목) ~ 7. 4.(금) / 2일간	
운영기간	2025. 7. 5.(토) ~ 8. 17.(일) / 44일간	2025. 7. 27.(일) ~ 8. 2.(토) / 7일간
운영시간	11:00 ~ 17:50 / 1일 6회	10:00 ~ 17:00 / 1일 5회
철거기간	2025. 8. 18.(월) ~ 8. 19.(화) / 2일간	2025. 8. 2.(토) ~ 8. 3.(일) / 2일간
휴장일	매주 월, 미세먼지주의보 발령, 우천 시	미세먼지주의보 발령, 우천 시
이용대상	과천시민(초등학생 이하)	과천시민(초등학생 이하)
입장정원	회당 60명(보호자 포함)	회당 100명(보호자 포함)
이용료	무료	무료

※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기간, 입장정원, 임시휴장일은 변경될 수 있음

- ※ 물놀이장 퇴수 작업은 폐장시간 이후 실시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※ 본 용역의 기타 유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·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.
- ※ 모든 인·허가 및 신고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.
- ※ 본 용역은 법정재난, 천재지변, 재난·재해, 운영 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.

라. 설치장소

1) 문원체육공원

- 위 치: 과천시 문원로 56
- 시설형태: 물놀이형 수경시설(물놀이터+바닥분수)

2) 과천갈현초등학교

- 위 치: 과천 갈현동 145
- 시설조성: 기타 유원시설(임시 물놀이장)
- 과천갈현초등학교 내 설치장소 및 위치도



마. 용역금액: 219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- 1) 문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·관리에 따른 소요예산
- 2) 과천갈현초등학교 내 임시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따른 소요예산
- 3)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(인건비, 복리후생비, 의무용품, 사무용품, 운영비 등)
- 4) 공공요금(전기요금, 상하수도요금)은 공사 부담 ※갈현초 운영비: 업체 부담

II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

1. 과업범위

가. 과업수행 범위

- 1)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, 이용객 질서유지
- 2) 물놀이시설 운영요원, 의무요원(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) 등 배치
- 3)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요건

문원체육공원(물놀이터+바닥분수)	과천갈현초등학교(임시 물놀이장)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	관광진흥법 시행규칙[별표10의2]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·위생 기준(제39조의2 관련)

- 4) 야외 물놀이장 내 이용안내 및 홍보
- 5) 1주 2회 이상 물놀이 공간 세밀 청소 시행
- 6) 1일 2회 이상 간이 수질검사 및 소독 실시
- 7) 개장 전 1회 및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의뢰(먹는 물 수질검사기관)
- 8) 야외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

나.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 업무 일체 수행

- 1) 야외 임시 물놀이장 설치, 보수, 운영 및 관리 총괄
 - 물놀이장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
 - 전기시설,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
 - 수질 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
 - 온라인(모바일)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 업무 ※개장 1주일 전 까지 구축 완료
 -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
 - 사업(설치 및 유지관리·운영)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(별지1, 2 참고)
 -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2) 편의시설, 부대시설 조성·보수·철거 및 운영·관리 총괄
 - 청소계획 수립(분리수거 및 배출)
 - 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·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

다. 홍보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

- 1)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홍보계획 수립·시행
- 2) 안전사고 예방 업무(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) 일체 수행(별지3 참고)
- 3) 기타 과천도시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

2. 과업내용

- 가.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, 안전관리, 이용인원 보고,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 또한,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 시 감독관의 검사,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- 나.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, 투입인력은 감독관과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한다.
- 다. 공원 내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감독관에게 우선 보고하여 결정 받은 후 물놀이시설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라. 관리 용역비 내역서
 - 1) 단순노무종사원 인부임은 「2025년도 과천시생활임금(금11,860원)」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 ※안전요원 인부임은 과천시생활임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별도 적용
 - 2)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른다.
 - 3) 임시 휴장(미세먼지 주의보 발령, 우천 등)으로 인해 운영인력의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당초 근무시간에 대한 휴업수당(50/100)을 지급한다.
- 마. 기타 사항
 - 1) 본 과업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2)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Ⅲ 과업수행 지침

1. 과업수행 일반사항

- 가. 과천도시공사(이하 ‘공사’)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(변경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공사와 공유하여야 하며,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내역을 포함한 제안서, 과업지시서,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.

- 라.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「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 용역」을 책임·수행토록 해야 한다.
- 마.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바.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.

2. 과업 전반사항

- 가. 야외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, 민원처리 등
- 나.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,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- 다.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- 라.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3. 사업계획 제출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기본계획(과업지시서, 제안요청서 등)에 따라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·시행한다.
- 나.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‘가’ 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.

4. 사업의 시행

- 가.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공사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다.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업 진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라. 날씨, 장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마.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긴급 휴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및 과천시 별양동측정소(도시대기)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, 우천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.

- 바.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및 방역 지침 미 이행으로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5. 사전승인 등

- 가.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나. 공사는 ‘가’ 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, 보완,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6. 시설물 · 장비의 설치 · 관리 등

- 가.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이 망실 ·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시설물의 망실 · 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손해액을 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대상자는 임시 물놀이장에 따른 인허가 절차(기타 유원시설 신고, 유기기구 검사 등)를 이행해야하며,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,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7.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공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공사 회계규정」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·집행해야 하며, 사업비 집행 시 공사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.

8. 사업비의 지급

- 가.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청구 시기는 용역 준공 이후로 한다.
- 나.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』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다.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운영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 · 보완 등이 필요한

경우 수정·보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,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.

9. 사업비 정산 및 반환

- 가.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은행 입금증 등 공사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 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- 라.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

10.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

- 가. 계약상대자는 운영·관리 결과보고서, 행사자료물을 운영·관리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
※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정산서, 이용객현황, 사진,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첨부

- 나.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·관리 결과보고서, 행사자료물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1. 계약이행의 보증 등

- 가.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공사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(보험기간 2025. 9. 26.까지)
- 나. 계약상대자는 임시 물놀이장(갈현초 현장) 운영 중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2. 지도·감독

- 가. 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- 나.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다. 공사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3. 손해배상 등

- 가.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단,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나.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공사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, 공사는 그 기간만큼 야외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할 수 있다.
 - 1)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: 계약액 일할×일
 - 2)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: 계약액/총 운영 횟수×중단 횟수
- 다. ‘나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, 공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사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14. 계약의 해지 등

- 가.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 - 1)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·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
 - 2) 공사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
 - 3) 계약상대자의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
 - 4) 계약상대자의 파산, 회생, 회사정리,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

생활 시

5)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·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공사가 인정하였을 경우

6)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

-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
-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
-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
-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공사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나.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다. 협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,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.

15. 기타 사항

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

IV 세부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

1. 세부 과업내용

가.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, 부대시설 조성, 운영·관리 업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1) 야외 물놀이장 설치·관리·운영총괄

-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
-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·사고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방안 수립(별지4 참고)
- 홍보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
-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
-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

2) 기타 야외 물놀이장 운영 관련 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

나. 계약상대자의 의무

- 1) 계약 상대방은 용역 착수 시, 착수계, 관리운영계획서, 현장대리인,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(안전관리자 교육 계획 포함)를 제출하고 착수 후, 정밀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개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.
- 2) 용역 추진 사항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.(보고 방식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)
- 3)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,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,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4) 과업내용 중 세부사항은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5) 4대 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, 개인별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6)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(피해보상 포함) 하여야 한다.
- 7) 내역서 상 보험료를 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진행하고 추후 정산 시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8)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된 응급약품을 상시 구비하여야 하며,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반드시 관리자 1인 이상 병원까지 후송(119신고 포함) 및 안내 조치하고 상황을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9) 용역수행 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 신고 건수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0) 기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
다. 적용법규 및 기준

- 1)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,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- 2) 본 과업지시서는 물놀이장 운영관리 사업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모든 과업은 해당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.

라. 수질관리 방법

- 1)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2에 의거한 기타 유원시설(물놀이장)의 안전·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야외 물놀이장은 매일 청소 후 새로운 용수(수돗물)를 급수하여 운영한다.
단, 조립식 수영장은 담수용량에 따른 여과기를 사용하여 1일 1/3 이상 새로운 용수를 보충한다.
- 3) 유행성결막염 환자, 피부병 환자 등 전염성 질환 환자는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- 4) 야외 물놀이장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5) 영유아의 경우, 반드시 방수기저귀를 착용하고 물놀이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.
- 6) 야외 물놀이장 수질검사는 개장 전 1회 및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및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시설을 재운영한다.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조치한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다.(별지1 참고)
- 7) 야외 물놀이장 개장시간 동안 상시 부유물질을 제거한다.

마. 수질검사 항목 및 관리기준

- 1) 물놀이형 수경시설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9의2)

검사항목	검사기준(천수용수)	비 고
수소이온농도(pH)	5.8 ~ 8.6	수질검사기관
탁도	4NTU 이하	"
대장균수(개체수/100ml)	200 미만	"
유리잔류염소(단 염소소독시만)	0.4 ~ 4.0mg/l	"

- 2) 기타 유원시설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)

검사항목	검사기준(천수용수)	비 고
수소이온농도(pH)	5.8 ~ 8.6	수질검사기관
탁도	2.8NTU 이하	"
대장균수(개체수/10ml)	2개 이하 / 5개(10ml)	"
유리잔류염소(단 염소소독시만)	0.4 ~ 2.0mg/l	"
과망간산칼륨	15mg/l	"

바. 야외 물놀이장 기타관리

- 1)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방역을 실시한다.
- 2) 이동식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지지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.
- 3)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.
- 4) 물놀이장 주변지역에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.
- 5) 쓰레기(일반 및 음식물 등)는 수시로 처리한다.
- 6) 물놀이시설 설치장소의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사. 운영인력 관리

- 1)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·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,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2)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인력 채용 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.
- 4) 최소 인력확보 기준 (단위: 원)

구 분	계	총괄관리자 (현장대리인)	안전 관리자	안전 요원	의무 요원	청소 환경	주차 안내
문원공원	27	1	1	9	1	2	-
갈 현 초			1	8	1	2	1

- 5)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·지시할 수 있다.

아. 노무관리

- 1)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물놀이장 관리인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2)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야외 물놀이장 근무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야외 물놀이장 근무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(예시: 근무태만, 지시 불이행, 민원유발 행위, 무단근무지 이탈 등)

- 3) 운영요원 및 야외 물놀이장 관리자는 근무시간 동안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, 복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자. 관리운영 세부지침

- 1)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(별지2)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매일 보고한다.
- 2) 물놀이장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.
- 3)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요원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주변, 화장실, 샤워실, 탈의실 등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한다.
※화장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청소한다.
- 4) 야외 물놀이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, 제자리에 정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- 5) 야외 물놀이장 내에서의 취사행위, 음료 등의 음식물 섭취는 물 오염 원인이므로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한다.
- 6) 집중호우로 인하여 범람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 후 물이 빠진 후 바닥의 잔재물(부유물, 토사 등)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.
- 7) 야외 물놀이장 운영요원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위생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며,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8) 청소뿐 아니라 취사, 음주,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계도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.

차. 관리(청소) 계획수립 및 기록유지

- 1) 용역 근무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, 수질 관리시간, 특이사항 등을 일일근무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용수 입·퇴수 작업 전·후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며, 매일 확인 받아야 한다.
- 2) 물놀이장 별로 특이 사항, 안전사고 예방, 각종 현수막 게시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게시 한다.

카. 기타사항

- 1)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, 계약상대자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.

- 3) 고온에 의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약품, 비상식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- 4) 야외 물놀이장 내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은 용역 착수 후 즉시 게시한다.
- 5) 야외 물놀이장 내에 위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도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.

2.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

가.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·관리,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·관리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.

1) 야외물놀이장 설치 운영·관리 개요

- 설치·운영·관리·철거 일정표 및 방법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
- 상주 총괄 관리자, 분야별 관리자, 기대효과 등
- 야외물놀이장 운영·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·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·관리하며, 근로시간·환경·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

2)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(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반영)

- 야외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
- 야외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서 및 내역서
- 고객 이동 동선 관리계획(배너, 현수막, 안내판 등의 배치도 포함)
- 기타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등 필요한 사항
- 전력 및 상수 이용계획

3) 야외 물놀이장 수질 운영·관리 계획

4) 야외 물놀이장 철거 및 원상복구계획

5) 안전관리 계획(의무실, 안전관리요원, 방역소독, 주차안내 등)

6) 각종 부대시설(운영사무실, 의무실, 이동식 화장실, 간이 탈의실, 샤워실 등)의 설치계획

7)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정산보고 계획

8) 청소 계획(분리수거 및 배출)

9) 원상 복구 시 산업폐기물 처리 등 배출 계획

10) 예산투입 계획(설치 및 준비, 운영·관리 및 원상복구)

11) 기타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나.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

다. 총괄관리자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, 환경미화원, 주차안내원(갈현초)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.

라. 일반 운영요원은 **과천시에 거주하는 인력**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.

마.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- 1)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 하도록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·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, 야외물놀이장 수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, 매일 수질관리현황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운영·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급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운영·관리 시간이 끝나면 물놀이장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손·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 이후 환경정비 불량, 과실 또는 시설의 손·망실로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, 공사는 그 기간만큼 야외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운영·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한다. 다만 미세먼지, 한파 등 기상 및 전염병 상황으로 공사에서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5) 야외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공사가 필요로 하여 쌍방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6)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다.
- 7)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운영·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.

바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- 1) 유관기관(소방, 의료기관, 경찰 등) 협력시스템을 구축·강화한다.
- 2)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5)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운영·관리 중 이용객 및 운영·관리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- 6) 공사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자가 발견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 - 7)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·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 - 8) 야외 물놀이장 주변 및 부대시설(이동식 화장실, 간이 탈의실, 샤워실 등)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.
 - 9) 야외 물놀이장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 - 10) 주 시설,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.
 - 11) 야외 물놀이장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 주차장, 진입로, 이동동선,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고객, 설치장소의 특성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.
- 사.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예약 및 입장 인원 관리시스템을 확보한다.
- 아.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및 복구·사후정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자. 시설물 철거 후 임대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총 소요예산의 5%를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최종정산에 반영한다.
- 차. 현장을 답사·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,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.

야외 물놀이장 시설 규격서(안)

시설명	예시 사진	규격
조립식 풀장 (과천갈현초)		• 10m×15m×0.9m 이상 • 수영장 주변 낙상대비 충격 완화를 위한 스티로폼 등 설치
워터 슬라이드 (과천갈현초)		• 7m×4m×5m 이상 • 1개 이상 • 탑승높이 3m 이하 • 후면 낙상 충격방지 시설 포함
에어풀장 (과천갈현초)		• 10m×8m×0.6m 이상(어린이용) - 조립식 수영장과 연계 설치 • 4m×3m×0.6m 이상(유아용)
수질관리설비 (과천갈현초)	· 여과기 : 시간당 처리 용량 24m³/h · 펌프 : 1.5 ~ 2.0hp 이상 · 시설 안내문 등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	· 여과기, 펌프 등은 설치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화장실 (과천갈현초)		• 화장실(6*3m) • 남 : 소변기 2, 대변기 1, 세면대 1 • 여 : 대변기 3, 세면대 1
남녀탈의실, 옥외 샤워장 (과천갈현초)		• 남녀 탈의실 2개소 • 1,800(W)×5,300(L)×2,400(H) • 옥외 샤워부스(오픈형)
간이탈의실 (문원체육공원)		• 남녀 탈의실 2개소 • 2,500(W)×3,000(L)
휴게공간 (과천갈현초)	 	• 캐노피 5개소 이상 • 파라솔 10세트 이상
운영본부용 컨테이너 (공통)		• 3m×6m 이상 4개소(문원1, 갈현3) (운영본부, 의무실, 안전요원 휴게실)
안전휰스 (과천갈현초)		• 입장객 관리를 위한 물놀이장 주변 • 과천갈현초 주차장 보행로(60m)

※ 제시(안)를 참고하여 시설규격 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
(시설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)

[별지 2]

문원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일지

근무형태 : 평일 · 휴일

2025년 월 일 요일 / 날씨 :

안전관리자	감독관	부 장	결 재

근무자명단	구 분	점검시간	청소상태	비고
	물놀이터 주변	:		
	바닥분수 주변	:		
	화장실 관리	:		
	탈의실 관리	:		
	쓰레기통 관리	:		

☐ 용수관리

물놀이터				바닥분수			
급수시간	급수량(m ³)	배수시간	배수량(m ³)	급수시간	급수량(m ³)	배수시간	배수량(m ³)
: ~ :		: ~ :		: ~ :		: ~ :	

☐ 수질관리

검사시간	1회	2회	3회	4회
	:	:	:	:
검사결과				

☐ 약품 사용량

구 분	전일 사용량	금일 사용량	누 계	입고량
소독제(ℓ)	ℓ	ℓ	ℓ	ℓ

☐ 이용인원 현황

금일 이용인원	전일누계 이용인원	누계 인원	비 고
명	명	명	

☐ 특이사항(민원사항, 지시사항 이행 등)

지시사항	구 분	내 용	비 고

과천갈현초 임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일지

근무형태 : 평일 · 휴일

2025년 월 일 요일 / 날씨 :

안전관리자	감독관	부 장	결 재

근무자명단	구 분	점검시간	청소상태	비고
	물놀이장 주변	:		
	풀장, 워터슬라이드 주변	:		
	화장실 관리	:		
	탈의실 관리	:		
	샤워실 관리	:		
	쓰레기통 관리	:		

☐ 용수관리

에어풀장				조립식 풀장			
급수시간	급수량(m³)	배수시간	배수량(m³)	급수시간	급수량(m³)	배수시간	배수량(m³)
: ~ :		: ~ :		: ~ :		: ~ :	

☐ 수질관리

검사시간	1회	2회	3회	4회
	:	:	:	:
검사결과				

☐ 약품 사용량

구 분	전일 사용량	금일 사용량	누 계	입고량
소독제(ℓ)	ℓ	ℓ	ℓ	ℓ

☐ 이용인원 현황

금일 이용인원	전일누계 이용인원	누계 인원	비 고
명	명	명	

☐ 특이사항(민원사항, 지시사항 이행 등)

지시사항	구 분	내 용	비 고

[별지 3]

야외 물놀이장 안전 · CS 교육일지

		안전관리자	감독관	부 장	결 재
교육구분	☐ 정기교육 ☐ 특별안전보건 교육 ☐ 작업내용 변경교육 ☐ 기 타 () 교육				
교육분야	☐ 안전교육 ☐ CS교육				
교육개요	교육일시	교육장소	교육담당		
	2025. . .() :		직 위	성 명	
교육인원	구 분	인 원	비 고		
	교육 대상자수	명			
	교육실시자수	명			
	교육 미 실시자수	명			
교육내용					
교육사진					
특이사항					

※교육 참석자 명단 첨부

[별지 4]

동향보고서

☐ 제 목 :

☐ 사고발생 개요

○ 일 시 : 2025년 월 일(요일) 시 분

○ 장 소 :

☐ 사고자 인적사항

성명		성별	
생년월일		연락처	
주소			

☐ 사고내용

-
-
-

☐ 조치 및 결과

-
-
-